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호남지방통계청 -

2022. 4.

통 계 청

1.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호남지방통계청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현장조사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호남지방통계청
- 감사범위 : 일반행정 및 인사분야, 예산회계분야, 통계조사분야, 청렴·행동강령분야(갑질행위, 소극행정 포함) 등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2. 3. 14. ~ 3. 24.(9일간)
 - 사전교육 실시 : '22. 3. 10.(목), 14:00 ~ 16:00
- 감사대상기간 : '18. 7. 1. ~ '22. 2. 28.까지(3년 8개월)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10명

4. 감사중점사항

- 통계조사 정확성 및 조사대상처 관리 등 현장조사 적정성
- 유연근무 실태 등 복무관리 적정성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예산집행 적정성
- 지역통계 작성승인 등 지역통계 업무 적정성
- 갑질행위 근절 노력 및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등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명세

통 계 청 통 보

(일련번호 : 1)

제 목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에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통계청훈령)』에 따라 단위업무별로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호남지방통계청훈령)』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호남지방통계청훈령 제30호, 2022.1.1., 이하 위임전결규정)』 ‘별표1’에 따르면, 「근무지외 출장(관할구역외 출장)시 4급 사무소장은 호남청장, 5급 이하 사무소장은 호남청 조사지원과장이 전결권자이고, 분소장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소속 사무소장이 전결권자」로 되어있다. <표1> 참조

<표1> 단위업무별 전결사항(『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별표1’)

단 위 업 무 명		전결권자		지방청장
		팀장	과장(소장)	
1. 공통사항				
관할구역 외 출장	과장, 4급 사무소장, 감사팀장			○
	5급 이하 (단, 사무소장은 조사지원과장이 전결)		○	
5. 분소				
관할구역 내/외 출장	분소장 출장신청		○	

따라서, 호남청 소속 사무소장 및 분소장은 출장 시 위임전결규정 상 지정된 전결권자에게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출장을 수행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8.7.1.~2022.2.28.) 중 호남청 사무소장 및 분소장의 출장 시 위임 전결 내역을 검토한 결과, 호남청 <사무소장(현 ■■■청 ◎과장) R 등 3명은 근무지의 출장 (관할구역 외 출장) 시 위임전결규정을 따르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결재(전결처리)를 하는 형태로 출장을 수행하였다. <표2> 참조[세부내역 붙임]

<표2> 사무소장 근무지 외 출장 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내역('18.7.1.~'22.2.28.)

부 서	직 급	성 명	위반건수	현 근무처
<사무소	□급	R	3	■■■청 ◎과
⊗사무소	○급	U	4	■■■청 ◆과
Ⓜ사무소	○급	G	3	Ⓜ사무소
합 계			10	

또한, 분소장은 본인 출장 시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소속 사무소장이 전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청 >사무소 ★분소장 F(현 퇴직) 등 4명은 위임전결규정과 다르게 본인들이 직접 결재(전결처리)를 하는 형태로 출장을 수행하였다. <표3> 참조[세부내역 붙임]

<표3> 분소장 출장 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내역('18.7.1.~'22.2.28.)

부 서	직 급	성 명	위반건수	현 근무처
★분소	●급	F	5	퇴직
●분소	●급	A	3	Ⓜ사무소
★분소	●급	H	1	공로연수
●분소	●급	K	1	퇴직
합 계			10	

관계기관 의견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호남지방통계청 자체위임전결규정』 상 지정된 단위업무별 결재(전결)권자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출장 시 결재(전결)권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앞으로 자체위임전결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무소장 출장 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출장내역('18.7.1.~'22.2.28.)

출장시 소속	직급	성명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내용
㉠ 사무소	○급	G	2020.11.18.	◆남도 ㅁ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불응가구 원통관리자 면담(G 외 1명)
			2020.7.30.~7.31.	㉠도 ㉠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교관단 교육(G)
			2020.7.14.	㉠광역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교관단 교육(G)
			위임전결규정 위반 출장 3건 - ㉠사무소 관할구역[㉠군, ㉠군, ㉠군]		
㉡ 사무소	○급	U	2019.12.30.	◆북도 ▷시	▷사무소 사무소장 ◁ 참석(U 외 1명)
			2019.12.10.	㉠남도 ㉠시	2019년 농업전문기관 현지견학(U 외 14명)
			2019.8.27.	◆북도 ㉠군	외래작물 농업전문기관 견학(U 외 4명)
			2019.3.12.	◆북도 ▷시	사회조사부문 권역별 순회교육 참석(U)
			위임전결규정 위반 출장 4건 - ㉡사무소 관할구역[㉡시, ㉡시, ㉡시]		
◁ 사무소	□급	R	2020.11.26.	㉠광역시	vision 2021 호남청 성과운영 토론회 참석(R)
			2020.11.17.	㉠광역시	2020년 경제통계의 이해과정 강의 참석 및 호남청 ㉠심사위원회 참석(R)
			2021.11.24.	㉠광역시	2021년 제1회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포럼 참석(㉠광역시)(R 외 2명)
			위임전결규정 위반 출장 3건 - ◁사무소 관할구역[◁시, ㉠시]		

분소장 출장 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출장내역('18.7.1.~'22.2.28.)

출장시 소속	직급	성명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내용
● 분소	●급	A	2018.08.29	◆남도 ●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순회 및 실시지도(A 외 1명)
			2018.08.17	◆남도 ●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순회 및 실시지도(A 외 1명)
			2018.10.31.	◆남도 ◎시	어업통계조사 업무보고(A 외 2명)
★ 분소	●급	F	2018.11.02	◆남도 ★시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순회지도(★시 ●동 ●동 ☆면, ★면)(F)
			2018.10.25	◆남도 ★시	♠ 행사 참석(F 외 9명)
			2019.05.07	◆남도 ★시	◀ 행사 참석(F 외 9명)
			2018.11.20.	◆북도 ㉠군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관리 순회지도 출장(F)
			2019.4.29.	◆북도 ▷시	4월 직장교육 참석(F 외 8명)
★ 분소	●급	H	2020.7.17.	◆북도 ▷시	찾아가는 정신건강조사 참석(H 외 4명)
● 분소	●급	K	2019.05.07	◆남도 ●읍	2019년 ◀ 행사 참석(K 외 2명)

통 계 청

주의요구·시정

(일련번호 : 2)

제 목 공가 사용 부적정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사무소

내 용

1. 업무 개요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2022.1.4.)』 ‘제8장 휴가 다.공가’에 따르면,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한해서 공가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남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기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및 재해상황에 한해서만 해당 일 또는 시간만큼 공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의 지각은 공가가 아닌 개인 연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8.7.1.~2022.2.28.) 중 호남청의 공가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무소 ○급 AB는 총 3건의 공가를 기관이 천재지변(폭설)으로 인정하지 않은 일자에 사용하였다. <표> 참조

<표>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은 천재지변 사유의 공가 사용현황('18.7.1.~'22.2.28.)

소 속	직 급	성 명	공가 사용일자	공가 사용시간	공가사유
◀사무소	○급	AB	2021.1.7.	09:00~11:00 (2시간)	출근지연(폭설)
			2021.1.8.	09:00~09:40 (40분)	출근지연(폭설)
			2021.2.17.	09:00~10:30 (1시간30분)	출근지연(폭설)

관계기관 의견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공가 관련규정 숙지 및 자체 복무관리 강화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주의] 동 건과 관련하여 기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공가를 3회 사용한 ▶사무소 ○급 AB에게 “주의” 조치하오니 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동 건과 관련하여 공가 사용의 시정이 필요한 1명(▶사무소 ○급 AB)에게 저촉연가 4시간 10분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3)

제 목 통계활동비 지급 착오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은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통계활동비 지급지침(통계청 ○과)」에 따라 지방통계청에서 현장조사, 현장조사 지원, 지역통계 개발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매월 초 통계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통계활동비 지급지침(통계청 ○과, 2021.1.29.)」 ‘제4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에 따르면, 「지급방법은 월 정액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 자격의 취득(신규채용, 전입) 또는 상실(퇴직, 전출) 있을 경우와 출산휴가, 교육훈련, 파견, 병가 등으로 연속일수 10일 이상 해당 월의 업무를 지속하지 못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호남청은 소속 공무원의 통계활동비를 지급할 때와 지급한 후에는 일할 계산 사유의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정확히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20.4.1.~2022.2.28.) 중 호남청의 통계활동비 지급내역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과 ◆급 E에게 19,360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총 10명에게 158,070원을 적정 지급액보다 적게 착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표> 호남청 통계활동비 착오지급 현황(2020.4.~2022.2.)

소 속	직급·성명	지급월	실 지급		적정 지급		차이 (B-A)	일할지급 사유
			일수	금액(원) (A)	일수	금액(원) (B)		
●과	◆급 E	'21.5.	23	55,640	31	75,000	19,360	육아휴직 복직 ('21.05.09.)
◎과	◇급 X	'20.7.	0	0	2	9,670	9,670	병가종료('20.07.10.)
◎과	◎급 V	'21.11.	9	45,000	11	55,000	10,000	병가종료('21.11.19.)
◇과	◆급 P	'21.8.	30	145,160	31	150,000	4,840	병역휴직 복직 ('21.08.02.)
⊗사무소	◎급 Z	'22.2.	10	53,570	13	69,640	16,070	병가시작('22.02.14.)
⊗사무소	◎급 B	'21.8.	0	0	14	67,740	67,740	육아휴직 복직 ('21.08.18.)
⊗사무소	●급 AC	'21.2.	26	139,280	28	150,000	10,720	질병휴직 복직 ('21.02.03.)
▷사무소	◆급 Y	'20.6.	15	75,000	16	80,000	5,000	초임발령('20.06.15.)
▷사무소	◆급 L	'20.6.	15	75,000	16	80,000	5,000	초임발령('20.06.15.)
▷사무소	◆급 M	'21.5.	0	0	2	9,670	9,670	육아휴직 휴직 ('21.05.03.)
합 계							158,070	

관계기관 의견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각 부서별 통계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의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 ① 앞으로 통계활동비 지급시 착오 지급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동 건과 관련하여 10명에게 과소 지급한 통계활동비 158,070원(●과 ◆급 E 19,360원, ◎과 ◇급 X 9,670원, ◎과 ◎급 V 10,000원, ◇과 ◆급 P 4,840원, ⊗사무소 ◎급 Z 16,070원, ⊗사무소 ◎급 B 67,740원, ⊗사무소 ●급 AC 10,720원, ▷사무소 ◆급 Y 5,000원, ▷사무소 ◆급 L 5,000원, ▷사무소 ◆급 M 9,670원)을 추가 지급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통 보

(일련번호 : 4)

제 목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부적정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에서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운영 중인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위해 『호남지방통계청 공용차량 관리지침(호남청 ○과)』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공용차량 관리지침(호남청 ○과, 2013.5.27.)』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차량 운행자는 ‘별지1호’ 서식의 당일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차량관리 담당자는 그 운행일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서장은 적정성을 확인하고 승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 지침 ‘별지1호’ 서식에는 ‘출발지·도착지’, ‘운행거리(km)·운행거리누계(km)’, ‘운행시간’, ‘유류사용량’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통계청 업무 포털시스템(UBIS) 내 차량일지 메뉴를 통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호남청은 공용차량을 운행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발지’, ‘도착지’, ‘운행거리’, ‘운행거리누계’, ‘운행시간’, ‘주유량’, ‘주유금액’ 등을 통계청 업무 포털시스템(UBIS) 내 차량일지에 정확히 기입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8.7.1.~2022.2.28.) 중 호남청의 공용차량 운영을 기록한 차량일지를 검토한 결과, 2021.7.19.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사 및 답례품 배부’ 목적으로 ‘㉠군’ 내에서 운행된 ○ 차량의 운행거리를 -126,970km로 기입하는 등 총 2건의 운행거리를 착오 기입하였다. <표1 참조>

<표1> 차량운행일지 운행거리 착오 기입 내역(2018.7.1.~2022.2.28.)

차량소속부서	차량번호	운행일	용도	출발지	도착지	운행거리(km)
㉠사무소	○	'21.7.19.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사 및 답례품 배부	㉠군	㉠군	-126,970
◇과	■	'20.3.6.	농가경제, 농축산물생산비 조사 인수인계	㉡광역시 ●구	♡군	-43,899

또한, ‘주유량’은 있으나 ‘주유금액’이 기입되지 않거나, ‘주유금액’은 있으나 ‘주유량’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가 총 8건, 주유량 대비 주유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게 기록된 경우가 16건 등 총 24건 확인되었다. <표2> 참조[세부내역 불임]

<표2> 차량운행일지 주유량 및 주유금액 착오 기입 내역(2018.7.1.~2022.2.28.)

차량 소속부서	주유량 기입 & 주유금액 미기입(건수)	주유량 미기입 & 주유금액 기입(건수)	주유량 대비 주유금액 부적정 기입(건수)	합 계
◆과	2	1	6	9
㉡사무소	4	1	10	15
합 계	6	2	16	24

또한, 2020.11.23. ‘김장무, 배추생산량조사’ 용도로 운행된 ● 차량은 ‘□군’에서 ‘㉢군’까지 운행되었으나, 운행거리가 0km로 기록되어 있는 등 원거리 운행임에도 운행 거리를 0km로 기입한 사례가 총 2건 확인되었다. <표3> 참조

<표3> 차량운행일지 운행거리 착오 기입 내역(2018.7.1.~2022.2.28.)

차량소속부서	차량번호	운행일	용도	출발지	도착지	운행거리(km)
□사무소	●	'20.11.23.	김장무, 배추생산량조사	□군	□군	0
▷사무소	●	'21.10.22.	농가경제, 농산물생산비조사 현장조사 및 조사표 기입지도	▷시	⊙군	0

관계기관 의견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차량 운행 후 즉시 차량 사용자 및 차량관리 담당자가 차량일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 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른 공용차량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일지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량운행일지 주유량 및 주유금액 착오 기입 내역(2018.7.1.~2022.2.28.)

차량 소속부서	차량번호	운행일	출발지	도착지	운행거리 (km)	주유량 (ℓ)	주유금액 (원)
1. 주유량은 있으나 주유금액 없음							
◆과	◎	'21.06.21.	▣광역시 ●구	▣광역시 ●구	21	23.151	
◆과	●	'21.06.29.	▣광역시 ●구	▣광역시 □구	88.5	19.683	
▣사무소	◇	'20.09.18.	△군	▣군	130	24.372	
▣사무소	◇	'20.11.17.	△군	▣군	136	21.49	
▣사무소	▣	'20.02.19.	△군	▣군	161	19.23	
▣사무소	◆	'20.06.05.	△군	▲군	37	24	
2. 주유금액은 있으나 주유량 없음							
◆과	◎	'21.11.17.	▣광역시 ●구	▣광역시 ●구	24		32,950
▣사무소	▣	'21.09.24.	△군	▣군	77		48,460
3. 주유금액 대비 주유량 이상							
◆과	◎	'21.06.07.	▣광역시 ●구	▣광역시 ●구	13	15.25	39,800
◆과	◎	'21.07.30.	▣광역시 ●구	▽시	76	19876	31,010
◆과	◎	'21.10.01.	▣광역시 ●구	▽시	69	20433	31,990
◆과	□	'20.04.13.	▣광역시 ●구	▣광역시 ▣구	57	13584	17,450
◆과	□	'20.09.23.	▣광역시 ●구	▽시	124	21.98	1,319
◆과	□	'20.11.02.	▣광역시 ●구	▣광역시 ▣구	87	25	3,148
▣사무소	▣	'20.07.03.	△군	▣군	164	14937	19,380
▣사무소	◇	'20.06.08.	△군	▣군	129	20300	26,170
▣사무소	▣	'20.01.22.	△군	▣시	77	12953	20,000
▣사무소	▣	'20.01.29.	△군	▣군	150	12953	20,000
▣사무소	▣	'20.02.11.	△군	▣군	58	24220	37,396
▣사무소	■	'20.02.07.	△군	▣군	169	17948	27,140
▣사무소	■	'20.07.08.	△군	▣군	219	15683	20,350
▣사무소	◆	'20.03.16.	△군	▣군	112	24341	34,900
▣사무소	◆	'20.06.03.	△군	△군	146	23456	29,060
▣사무소	◆	'20.11.12.	△군	▣시	69	1.3	10,070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5)

제 목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착오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및 『통계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통계청예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2호, 2022.1.18.)』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664쪽)’ 및 『통계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통계청예규 제237호, 2020.3.12.)』 ‘제6조 복지점수 부여기준’에 따르면, 「기본복지점수는 400점, 근속복지점수는 1년 근속 당 10점으로 최고 300점,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하며, 배우자 100점, 첫째 자녀 50점, 둘째 자녀 100점, 셋째 자녀부터 200점, 직계존속은 50점을 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호남청은 소속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부여할 때에,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복지점수, 근무년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는 근속복지점수,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을 확인하여 부여하는 가족복지점수를 각각 지침에 따라 산정한 후, 최종 복지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20.4.1.~2022.2.28.) 중 호남청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내역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에서 호남청 ◎급 B에게 근속점수로 160점을 배정하여야 하나 170점으로 과다 배정하는 등, 총 290점(8건)의 복지점수를 과다 배정하였다. 또한, ◆과 ●급 C에게 가족점수로 150점을 배정하여야 하나 100점으로 과소 배정하는 등, 총 100점(2건)의 복지점수를 과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표> 호남청 맞춤형 복지점수 착오배정 내역(2021년)

(단위 : 복지점수, 천원)

연번	배정 년도	부서 (현부서)	직급·성명	기 배정점수(A)				적정 배정점수(B)				착오배정 점수 (A-B)	착오내역
				기본 점수	근속 점수	가족 점수		기본 점수	근속 점수	가족 점수			
1	2021	호남청 (⊗사무소)	◎급 B	920	400	170	350	910	400	160	350	+10 (과다)	근속점수
2	2021	호남청 (★분소)	◎급 O	880	400	180	300	870	400	170	300	+10 (과다)	근속점수
3	2021	호남청 (◆과)	◎급 W	490	400	90		480	400	80		+10 (과다)	근속점수
4	2021	호남청 (◎과)	◎급 AA	810	400	160	250	800	400	150	250	+10 (과다)	근속점수
5	2021	○과	◆급 D	520	400	20	100	420	400	20		+100 (과다)	가족점수
6	2021	○과	●급 S	880	400	230	250	830	400	230	200	+50 (과다)	가족점수
7	2021	⊗과 (▷사무소)	◎급 Q	600	400	150	50	550	400	150		+50 (과다)	가족점수
8	2021	⊗과 (▷사무소)	◎급 T	830	400	280	150	780	400	280	100	+50 (과다)	가족점수
9	2021	◆과	●급 C	780	400	280	100	830	400	280	150	-50 (과소)	가족점수
10	2021	Ⓜ (팀청)	◇급 I	490	400	40	50	540	400	40	100	-50 (과소)	가족점수
합 계												+290 (과다) -100 (과소)	

관계기관 의견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속점수 및 가족점수 착오배정 등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요청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 ① 앞으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근속점수·가족점수 착오배정 등으로 인한 과오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동 건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비 과다 지급한 8명[⊗사무소 ◎급 B 10,000원, ★분소 ◎급 O 10,000원, ◆과 ◎급 W 10,000원, ◎사무소 ◎급 AA 10,000원, ○과 ◆급 D 100,000원, ○과 ●급 S 50,000원, ⊗사무소(현 ▷사무소) ◎급 Q 50,000원, ⊗사무소(현 ▷사무소) ◎급 T 50,000원]에게 총 290,000원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 하시고, 과소 배정된 2명[◆과 ●급 C 50,000원, ㉠사무소(현 ◆과) ◇급 I(현 ㉠청 ◆과) 50,000원]에게 총 100,000원을 추가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개 선

(일련번호 : 6)

제 목 통계조사답례품(설득 및 협조용) 사후검증 미흡
소 관 국 田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田국은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 현장조사 정확성 확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답례 및 보상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20종 통계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농촌사랑상품권 등 통계조사답례품에 대한 지급·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田국은 『통계조사답례품지급·관리규정(통계청 훈령 제540호, 2019.12.26.)』 제6조(연간 지급계획 수립), 제8조(수요 파악)에 지방통계(지)청장의 신청을 파악하여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대상 통계조사, 답례품 품목 및 단가, 지급시기 및 횟수 등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설득 및 조사협력자용 통계조사답례품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처의 3%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규정(통계청 훈령 제540호, 2019.12.26.)』 제19조*에 따라 『통계조사 모니터링 용역사업』을 통해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받은 조사대상(사업체, 가구 등) 중 약 10,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규정』 제19조(실태점검) : ① ㉠과장 및 지방통계(지)청장은 통계조사 답례품 유용, 미지급 및 지급지연 여부, 재고 통계조사답례품 관리 및 활용현황 등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실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립된 연간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조사대상처에 답례품 지급여부 확인(질문항목) : 조사에 협조해 주신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 (상품·상품권)이나 사례금을 드리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설득 및 협조용 통계조사답례품은 조사대상처 설득 및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례금(상품권)으로서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조사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설득 및 협조여부를 판단하여 답례품을 지급한 후 답례품관리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고 소관부서장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지급관리를 하고 있으며, 田국(㉠과)에서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설득 및 조사협조자용 답례품은 기존 답례품과는 달리, 사전에 답례품 지급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조사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답례품이 사전에 계획성있게 지급되기 어려우며, 답례품수령자가 사전에 지급품목 및 시기를 인지할 수 없는 등 취약점이 있음에도 모니터링 등 검증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어 답례품 유용 등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 감사대상기간(2020.4.1.~2022.2.28.) 중 호남청 본부의 답례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부 3개과(㉠과, ◆과, ◇과)에서 ‘21년 기준, 연간 약 200명에 대하여 약 230만원의 설득 및 조사협조자용 답례품을 지급하였으나, 田국의 실태점검 이외에 답례품 수령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설득 및 조사협조자용 답례품 지급수령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답례품 지급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田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설득 및 조사협조자용 답례품 수령여부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田국장은 설득 및 조사협조자용 답례품 수령여부 검증강화를 위한 답례품 시스템 기능개선 및 제도적 장치(자체점검 또는 모니터링 용역사업에 포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주의요구·통보

(일련번호 : 7)

제 목 논벼생산량조사 조사관리 미흡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에서는 매년 약 870개 표본 필지를 대상으로 논벼 농산물생산조사(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114004호)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농작물생산조사(논벼) 조사지침서(☒과)』 50페이지와 52페이지에 따르면, 「날알수 조사(A표본구역 1포기)는 포기당 이삭수를 조사한 10포기 중 이삭수가 평균에 가까운 포기를 선정하여 유효이삭수와 총 날알수, 완전날알수를 조사한다. 이때 이삭수가 평균에 가까운 포기가 2포기 이상일 경우에는 조사 포기 번호가 빠른 순으로 선정하여 조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호남청에서는 『농산물생산조사(논벼) 조사지침서』에 따라 논벼생산조사 시 포기당 이삭수를 조사한 10포기 중 이삭수가 평균에 가까운 포기를 선정하여 유효 이삭수와 총 날알수, 완전 날알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8.7.1.~2022.2.28.) 중 호남청 ◇과의 논벼 예상량조사 결과를 농작물 생산조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1년 논벼 예상량 이삭수 조사 중 다음 2개 필지에서 날알수 조사 오류가 발견되었다. <표> 참조

<표> 2021년 논벼예상량 조사 포기당 이삭수 선정내역

총	조사구	지번	포기당 이삭수(A 표본구역)										평균이삭수
			1	2	3	4	5	6	7	8	9	10	
▷	☐	▶	15	22	22	15	21	18	25	10	17	19	18.4
⊕	♠	⊗	14	15	18	18	20	16	19	15	16	18	16.9

* 노란 음영부분이 조사표에서 잘못 선정된 포기당 이삭수, 동그라미 표시가 올바른 선정 대상임

▷총 ☐조사구 ▶지번의 경우, 포기당 이삭수 평균이 18.4개로 6번주(18개)가 선정되어야 하였으나 10번주(19개)가 선정되는 등, 총 2개 필지에서 포기 선정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관계기관 의견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표 내용검토를 철저히 하고, 총괄자 및 팀장이 최종 조사표를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주의] 동 건과 관련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논벼 생산량 조사 시 포기당 이삭수 선정 착오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총괄자가 최종 조사표를 검토하는 등 조사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통 보 (적극행정 모범사례)

(일련번호 : 8)

제 목 맞춤형 동영상 제작으로 실용통계교육 활성화
소 관 청 호남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은 미래의 통계 이용자이자 응답자인 청소년들에게 통계청 업무에 대한 소개와 통계의 접근성 제고, 통계조사 응답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찾아가는 통계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호남청은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로 진로맞춤형 교육,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 하는 등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맞추어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호남청 지역 특성상 산간·오지·낙도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통계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능기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산발적 집단 감염을 우려하여 대내·외적으로 통계교실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남청 ◆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맞춤형 실용통계 교육 동영상 콘텐츠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진행해왔던 통계교실 수업방식과는 다른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수립 후 목표로 추진하였다.

가. 통계교육 맞춤형 동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역량 결집을 위해 호남청 본부 및 사무소 통계교실 강사로 T/F팀을 구성하여 동영상 교안 및 제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1> 비대면 통계교실 동영상 제작 T/F팀 운영 내역

구분	회의일자	회의주제	인원
1차	2020.7.29.	비대면 통계교실 동영상 제작 방향설정	17명
2차	2020.9.3.	동영상 강의 교안에 대한 토론 및 강사 지정	21명
3차	2020.9.11.	동영상 강의 교안에 대한 추가·수정·보완 사항 토론	11명

그 결과로 교육 수요가 제일 많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전 학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과 수준별 영상(초급, 중급, 고급)을 각각 제작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5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여섯 챕터로 구성하여 코로나 종식 이후 대면 통계교실 수업에서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 측면도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표2> 비대면 통계교실 동영상 제작 과정

구분	월	주요 내용
계획수립	2020.8.	언택트 맞춤형 실용통계교육 동영상 제작 계획 수립
용역계약	2020.9.	동영상 촬영 계획수립 및 동영상 촬영
시연회	2020.10.	내부 제작 시연회 및 의견수렴
의견수렴	2020.10.	전문가 및 관련인 의견수렴(진로체험신청 4개학교)
배포	2020.11.	유관 기관 방문 및 동영상 배포(꿈길 등록, 유튜브 게재)

<표3> 비대면 통계교실 동영상 내용 구성

구분	# 1. 통계 & 그리고 통계청 (전학년 공통)	# 2. 통계교육 리마인드 (초급, 중급, 고급)	# 3. 생활 속의 통계 (전학년 공통)
1	1-1. 통계란 무엇일까요? ☐ 모든 사회 및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의미있는 숫자 1-2. 통계청은 어떤 일을 할까요?	2-1. 학교에서 배운 통계교육 리마인드(초급) ☐ 자료의 정리와 해석하는 방법 소개 ①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② 줄기와 잎 그림으로 정리	3-1.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 빅데이터 소개 ①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② 빅데이터의 가치, 특징, 처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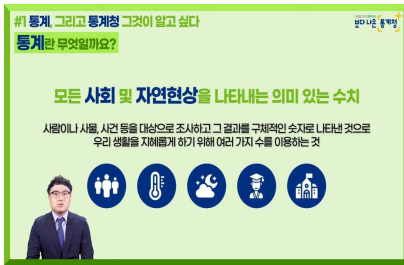
	□ 나라를 운영하거나 우리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만들고 알려주는 곳	③ 도수분포표를 활용하여 정리 ④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다각형에 대한 이해 ⑤ 상대도수 활용하기	③ 빅데이터의 수집 및 사례 ④ 빅데이터 시각화 방법 설명
2		2-2. 학교에서 배운 통계교육 리마인드(중급) □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및 확률의 개념에 대한 학습 소개 ① 사건과 경우의 수란 무엇인가? ② 경우의 수의 성질 ③ 확률이란 무엇인가? ④ 확률의 성질(1, 2) ⑤ 확률연구의 시작(1, 2)	3-2. 빅데이터 활용사례 □ 편의점에도 빅데이터가? ① 편의점 대왕요구르트 ② 김치찌개맛 감자칩 ③ 힘들땀 부드러운 푸딩하자 ④ 2018-2020키워드별 빈도수 사례 설명
3		2-3. 학교에서 배운 통계교육 리마인드(고급) □ 대푯값의 의미와 상관관계에 대한 학습소개 ① 대푯값 설명 (평균, 중앙값, 최빈값) ② 산포도(편차, 분산, 표준편차)의 특징 설명 ③ 산점도와 상관관계 설명 ④ 산점도와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나. 유관기관 협업 및 통계교육 확산에 기여

▣광역시 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맞춤형 통계교실 동영상 홍보 공문을 발송하는 대신 교육청 내부전산망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중학교(92개교)에는 진로전담 교사에게 내부 메일을 송부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동영상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퀴즈이벤트를 호남지방통계청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게시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호남청 유튜브 계정(https://m.youtube.com/channel/UCIAAwkAosjq_0C07dY32FFA)을 생성하여 통계교실 동영상을 11월~12월에 걸쳐 순차적인 게시(총 조회수 51,442회)는 물론 호남청에서 자체 개발한 동영상을 무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통계교육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그림 1> 호남지방통계청 유튜브 게시, SNS 홍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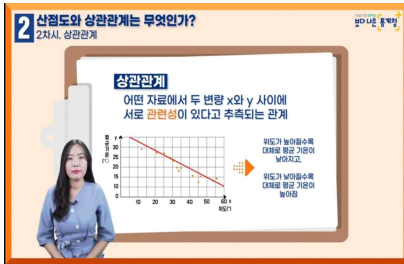
1. 통계 & 그리고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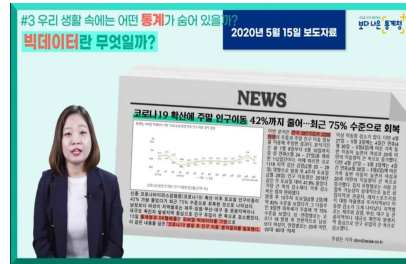
2-1. 통계교육 리마인드(초급)



2-2. 통계교육 리마인드(중급)



2-3. 통계교육 리마인드(고급)



3-1. 생활 속의 통계
(빅데이터 소개)



3-2. 생활 속의 통계
(빅데이터 활용사례)

소식지 발간 기념

Quiz Event

QR코드로 접속하셔서 퀴즈를 풀고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들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2. 16.)

호남지방통계청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언택트 실용통계교육 영상(슬기로운 통계교실) 6편**에서는 어느 곳에서 활용된 빅데이터에 대해 배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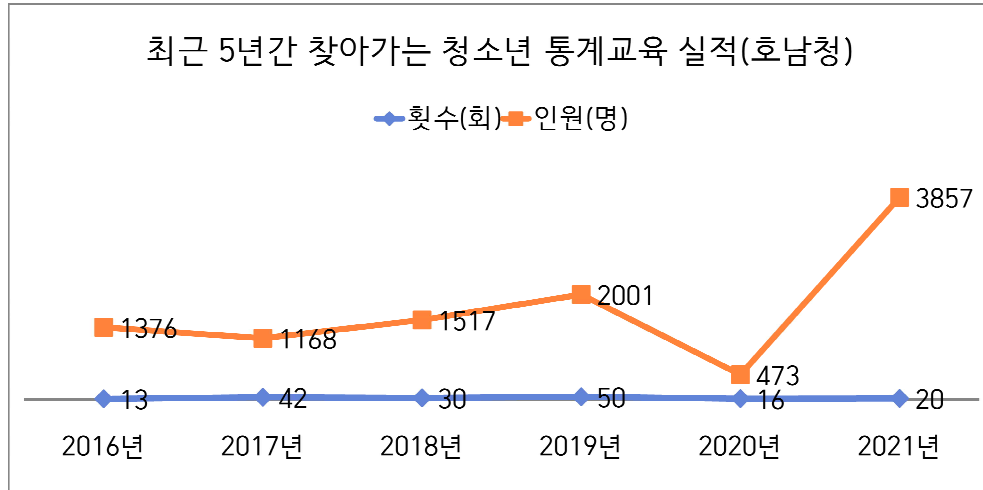
① 백화점 ② 대형마트 ③ 편의점 ④ 전통시장

SNS 홍보자료(동영상 관련 퀴즈)

다. 비대면 통계교실 운영 성과 분석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2021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더믹 현상에 대응하여 맞춤형 실용통계 동영상 활용 비대면 통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총 20회 3,857명의 청소년 통계교육을 하였다.

<표4> 최근 5년간 찾아가는 청소년 통계교육 실적(호남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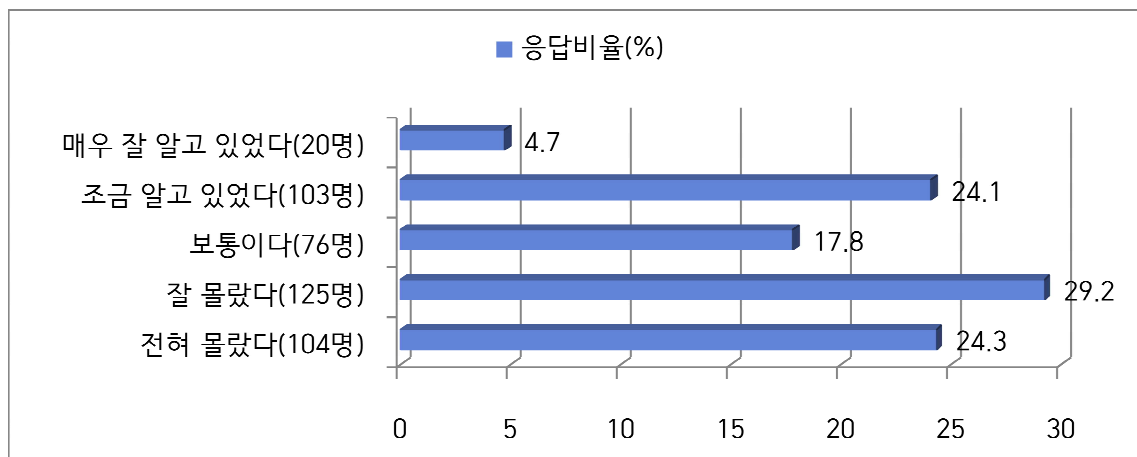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횟수(회)	13	42	30	50	16	20(비대면)
인원(명)	1,376	1,168	1,517	2,001	473	3,857

* '20년 대비 '21년은 교육 횟수(비대면)는 25% 증가(16회→20회)하였으나, 학습인원은 약 800% 증가(473명→3,857명)

또한, 관내 8개 중학교에서 1학년 39학급 943명, 2학년 29학급 649명, 3학년 33학급 697명, 총 101학급 2,289명이 참여하였으며, 동영상 상영 후 8개 학교에서 1개 학년에 1개반을 추출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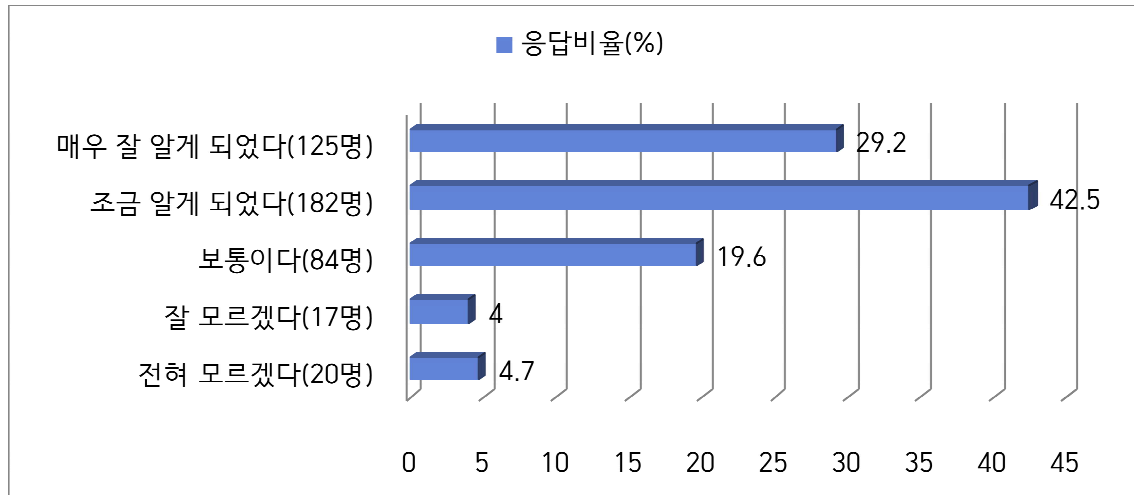
<표5> 비대면 통계교실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문항1-1.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 통계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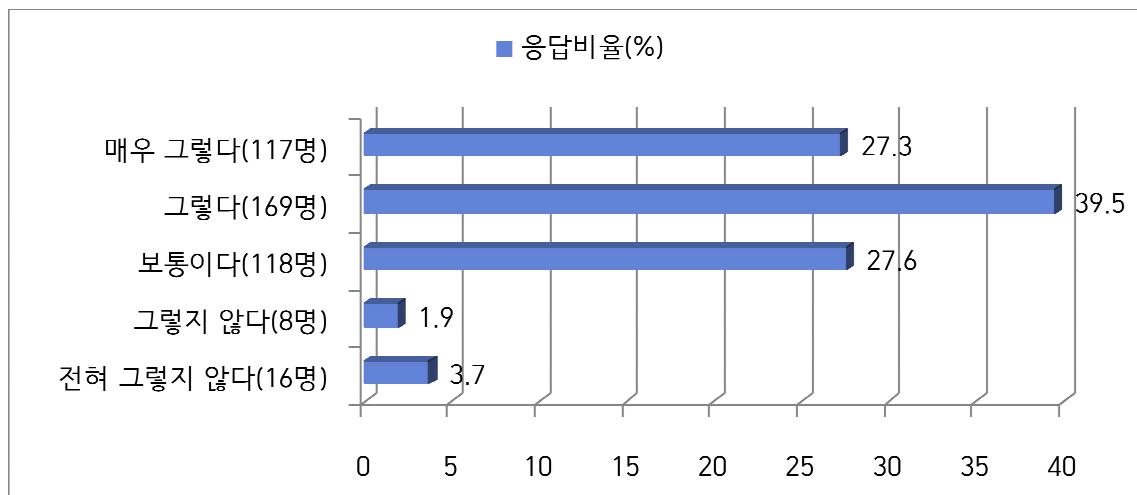
※ 동영상 시청 전 통계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잘 몰랐다(125명, 29.2%)> 전혀 몰랐다(104명, 24.3%)의 비율이 총 428명 중 229명(53.5%)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문항1-2. 동영상 시청 후, 통계청이 하는 일들을 알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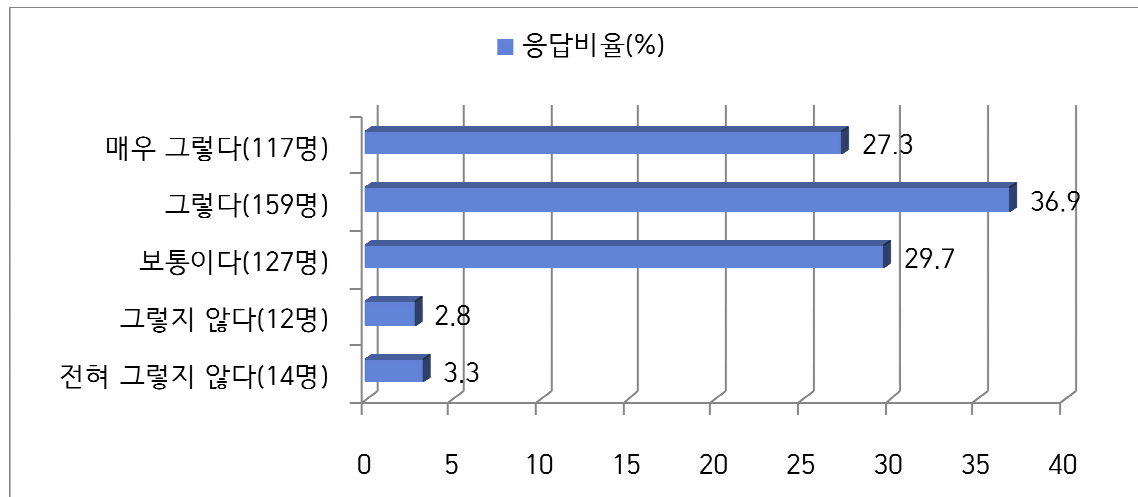
※ 동영상 시청 후 통계청이 하는 일을 조금 알게 되었다(182명, 42.5%) > 매우 잘 알게 되었다(125명, 29.2%)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총 428명 중 307명(71.7%)으로 기관 인지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항2. 동영상 중 [#2.~#4. 학교에서 배운 통계 리마인드(초급, 중급, 고급)] 내용이 복습에 도움이 되었나요?



※ 동영상 중 통계리마인드(초급, 중급, 고급)의 내용이 복습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6.8% (매우 그렇다 117명, 27.3% > 그렇다 169명, 39.5%)로 학생들의 통계교육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남

문항3. 동영상 중 [#5.~#6. 생활속의 통계(1편, 2편)] 내용의 이해가 되었나요?



※ 동영상 중 생활속의 통계(1편, 2편) 내용의 이해가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159명, 36.9%)>보통이다(127명, 29.7%)> 매우 그렇다(117명, 27.3%)** 순으로 전반적인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만족도 조사 결과 동영상 시청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통계청 기관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동영상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호남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맞춤형 통계교실 동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여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통계 교육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인력 동원 및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 교육의 비대면 전환만이 아닌, 다양한 구성을 통해 수준별 학습까지 가능하게 하여 우수한 콘텐츠의 대국민 서비스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20년 ◆남도 卍시, <시에 이어 ' 21년 >시 교육청 주관 교육 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되었다.

조치할 사항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통계 교육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과 ○급 J, ◇급 N에게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